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 5. 24.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6. 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개시일 이후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12.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대비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투자위험(원금손실위험)의 회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증권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위험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DV251)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다소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대상상품이며**,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TDF2050 증권투자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illegible]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2023. 3. 31. 기준 /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 혼합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신흥섭	1974년	책임 운용역 (상무)	13	4,147	-6.12	-2.24	-6.12	-2.24	18년 6개월
	송재혁	1981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5	37	-	-			10년 5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증가와 NAV(순자산)의 괴리 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 방식 변경 및 중단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 기구 유동성 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9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6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10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대상	과세 시기	세율	세제혜택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 (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3. 6. 1.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7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TDF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V25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V25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V2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V2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V2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DV2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DV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V2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V2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V2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V2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DV26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명(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V25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V25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V2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V2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V2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DV2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DV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V2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V2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V2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V2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DV26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기준일	변경사항
2022.6.30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22.8.5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 Cp3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및 클래스명칭 변경 - 연금저축 클래스(Cp, Cp-E) 및 퇴직연금 클래스(Cp2, Cp2-E) 판매보수 인상 * 동 펀드는 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펀드임
2022.8.25	- 투자신탁 최초설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시행일	내용
2017.06.15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7.06.28	-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1.03.31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 30/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 30/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2.4.22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기본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5.5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u>글로벌주식</u>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2.5.27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성장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3.04.24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및 설정
2014.03.21	-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2017.04.21	- 알파 전략 수정 (인핸드 포트폴리오 → 액티브퀀트 포트폴리오)
2018.06.22	- 이익분배 방법 변경 (전액 분배 →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
2022.4.22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기본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5.27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성장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변경사항
2021.01.28	- 등록신청서 효력발생
2021.01.29	-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22.03.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ESG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2.0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기준일	변경사항
2022.4.22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22.5.27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성장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6.3	-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2.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3.03.0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

-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시행일	내용
2017.06.15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7.06.28	-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2. 5. 5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변경 전 : 트러스톤 <u>백년대계</u>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변경 후 : 트러스톤 <u>글로벌채권</u>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022.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기준일	변경사항
2022.4.22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22.5.27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OCIO 연금솔루션 성장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6.3	-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2.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3.4.2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장기성장 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기준일	변경사항
2011.01.21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1.03.22	-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13.04.26.	- 투자대상자산 중 어음 삭제
2013.05.09.	- 투자대상자산 중 양도성 예금증서 추가
2014.03.16.	-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2022.06.30	-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 1 길 10(성수동 1 가)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3. 3. 31. 현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신홍섭	1974년	책임 운용역 (상무)	18년 6개월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경력 15.11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자산배분팀/ 채권운용본부 14.02 ~ 15.11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3.04 ~ 14.01 한화자산운용 FI운용2팀 05.07 ~ 13.04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03.01 ~ 05.06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99.09 ~ 01.03 현대증권 영업추진부 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송재혁	1981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10년 5개월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경력 21.08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OCIO컨설팅팀 16.10 ~ 21.08 한화자산운용 LDI전략팀 13.04 ~ 16.09 한화생명 투자전략팀 12.03 ~ 13.04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 06.05 ~ 10.10 SK증권 투자전략팀 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FRM, CAIA, 재무위험관리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자산배분팀 및 OCIO 컨설팅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3. 3. 31. 현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신홍섭	1974년	책임 운용역 (상무)	18년 6개월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경력 15.11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자산배분팀/ 채권운용본부
				14.02 ~ 15.11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3.04 ~ 14.01 한화자산운용 FI운용2팀
				05.07 ~ 13.04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03.01 ~ 05.06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99.09 ~ 01.03 현대증권 영업추진부
				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3. 3. 31. 현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진규	1980년	책임 운용역 (부장)	11년 10개월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및 응용통계학 학사
				경력 17.04~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퀀트운용팀
				15.06~17.03 NH농협생명 운용기획부
				08.08~15.06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3. 3. 31. 현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전춘봉	1980년	책임 운용역 (부장)	7년 3개월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20.04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8.03 ~ 20.04 삼성화재해상보험 특별계정운용파트
				13.11 ~ 18.02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0.09 ~ 13.11 한국투자신탁운용 Fixed Income 운용본부
				06.12 ~ 10.0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udit Group 1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공인회계사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3. 3. 31. 현재, 단위:개, 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 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신홍섭	13	4,147	-	-	-6.12	-2.24	-6.12	-2.24
송재혁	5	37	-	-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부책임운용역	신근수	2017.06.28 ~ 2021.07.06	-

※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책임운용역	안진규	2017.04.21. ~ 현재	-
부책임운용역	강현중	2021.06.03. ~ 2021.07.20	-

※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트러스톤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책임운용역	한규민	2021.1.29 ~ 2022.10.06	
	이태하	2022.10.07 ~ 현재	
부책임운용역	이태하	2021.1.29 ~ 2022.10.06	

※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부책임운용역	강지혜	2022.06.03~2023.03.02	-

※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부책임운영역	신근수	2017.06.28 ~ 2021.07.06	-

※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해당사항 없음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 분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책임운영역	신흥섭	2020.1.09. ~ 2020.7.21.	
	전춘봉	2020.7.22. ~ 현재	

※ 최근 3년 동안의 변경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V252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DV253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DV254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V255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DV256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DV257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V25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V259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V2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V2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DV2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트러스트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트러스트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65%이하
	트러스트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5%이하
	트러스트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이하
	트러스트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40%이하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0%이하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0%이하
	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0%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트러스트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시장전망 및 자체 개발한 Model을 통해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합니다. ② 정기,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③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60% 이상 투자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초과 가능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OSPI200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순수 패시브 포트폴리오와 KOSPI200선물로 KOSPI200수익률과 유사한 투자 수익률 추구합니다. -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Truston Factor Model)을 구성하여 BM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트러스트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 투자, 채권 40%이하 투자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신탁입니다.
	비교지수	없음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국내 주식 중 ESG지표가 개선될 수 있거나 또는 ESG지표가 양호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E(환경), S(사회책임), G(지배구조)를 투자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ESG지표를 활용한 투자 및 주주활동(ESG Engagement)으로 양호한 중장기 성과 추구 - ESG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높은 ESG지표 유지 기업 포함)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트러스트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 중 배당, 이자 등 인컴(Income)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배당, 이자 등 인컴(Income)수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분산투자와 적극적 자산배분을 통해 인컴수익과 함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시장전망 및 자체 개발한 Model을 통해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합니다. ② 정기,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③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채권에 60%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IS국고채권5~10년 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국채, 특수채 등 우량 장기 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채권에 60%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IS국고채 1~2년 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국내 채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및 실사(Due Diligence)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들 다양한 피투자집합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면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 안정적인 목표수익률을 획득하고자 하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중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재금리,

금리민감도 및 신용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주식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은 벤치마크지수를 효율적이고 대표적으로 추종하는지를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이러한 투자목적에 적합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시가총액, 유동성, 벤치마크 대비 성과, 수수료 등의 정량적 요인과 운용의 안정성, 투명성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정량적인 요인 분석은 블룸버그 단말기 등 금융정보제공 인프라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정성적인 요인의 분석은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제안서 및 관련 설명자료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는 운용 규모, 운용조직의 구성,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 등의 정성적 요인의 분석과 함께 정량적인 요인의 점검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5%이하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이하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5%이하	-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40%이하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30%이하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0%이하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0%이하	-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단, 40%이하 범위 내에서)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0% 초과 가능)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 증권	50%이상	▶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지분증권 (주식 등)	40%이하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 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 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10%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3)}	20%이하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트러스트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60%이상	▶ 주식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초과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30%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환매조건부 매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9)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10)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2)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3) 트러스트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 증권	40%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30% 이하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환매조건부 매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9)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10)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2)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증권	50%이상	▶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단,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은 40% 이하 편입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지분증권(주식 등)	40%이하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 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20%이하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11) 유동성자산	-	▶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5)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 증권	50%이상	▶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 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7)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8) 증권 차입	20%이하	▶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0)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6)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4)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집합투자 증권등	40%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	증권총액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매도	50% 이하	
7) 환매조건부 매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3)}	20%이하	▶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2)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취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 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주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7)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0%이하	

4)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집합투자 증권	5%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30%이하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7) 환매조건부 매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3)}	20%이하	▶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2)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취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 트러스트론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

	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4) 파생상품 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가), 나),3),4)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2) 트러스트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4)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4),5)-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3) 트러스트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

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4),5) -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4)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가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 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 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 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 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 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 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4) 파생상품 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가), 나),3),4)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5)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가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 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 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 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4) 파생상품 투자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가), 나), 3), 4)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6)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2)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

	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파생상품 투자	가)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1)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 3), 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 3), 4)-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7)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파생상품 투자	가)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3),4)-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및 실사(Due Diligence) 관련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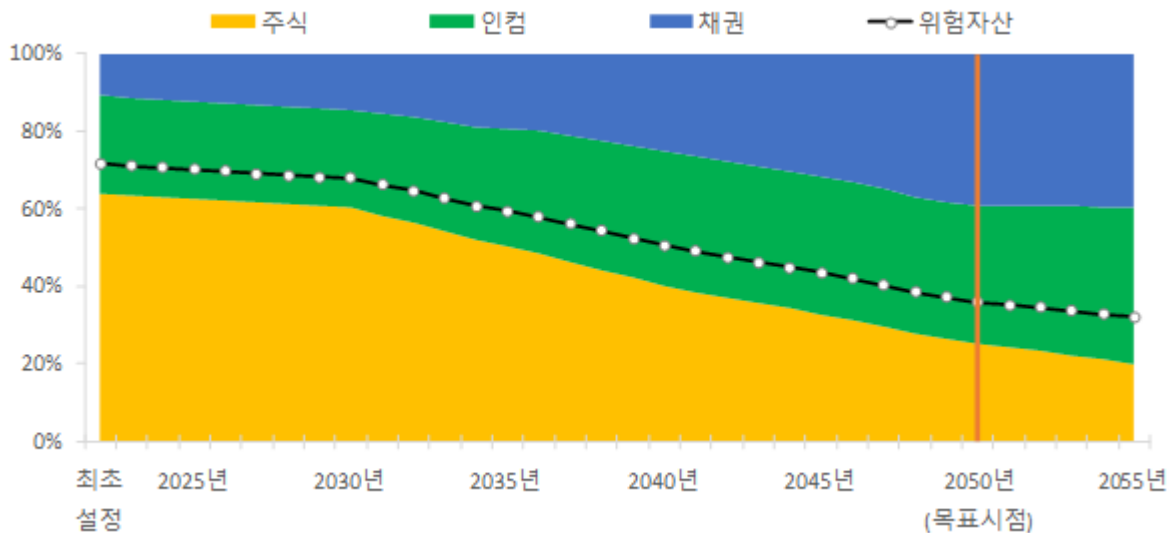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1)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국내 채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50년을 투자자의 은퇴시점이자 목표시점으로 설정하고 설계된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Glide Path)를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1-2) 세부 투자 전략

- 설정 초기 시점에는 국내외 주식 및 대체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률 제고와 노후자금 축적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목표시점이 가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과 인컴수익 발생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표시점까지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Glide Path)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통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 재산의 80% 이하로 투자하며, 목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2050년 이후로는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로 운용합니다.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 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주식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변동성과 투자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① 각 부문별 CIO, 리서치헤드, 펀드 매니저가 참석하는 Truston Global Macro Meeting을 통해 국가별, 자산군별 상대매력도 분석을 통한 펀드 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 ②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시장전망이 반영된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시장국면에 적합한 자산군별 비중을 결정하여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합니다.
- ③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정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또한 대외변수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합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 국내주식펀드/ETF : 대형/중소형, 배당, 성장/가치, 필수소비재 등
- 해외주식펀드/ETF :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등), 신흥국(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 대체투자펀드/ETF : 리츠, 금, 원자재 등(20%이하 투자)

(2)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기준일 : 2022. 4. 30 기준]

자산군	종목(펀드)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 투자대상	투자 비중(안)
주식	SPDR S&P500 ETF	ETF	미국	SSGA	미국 대형주	30%
	iShares Russell 2000 ETF	ETF	미국	BlackRock	미국 중소형주	10%
	The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ETF	미국	SSGA	미국 소비주	10%
	Vanguard Growth ETF	ETF	미국	Vanguard	미국 성장주	10%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ETF	미국	Vanguard	선진국 주식	20%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ETF	미국	BlackRock	신흥국 주식	10%
대체	Vanguard Real Estate ETF	ETF	미국	Vanguard	미국 리츠	5%
	Vanguard Global ex-U.S. Real Estate ETF	ETF	미국	Vanguard	글로벌 리츠	5%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TF명	SPDR S&P500 ETF		
BM지수	S&P500 Index		
투자전략	S&P500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etfs/funds/spdr-sp-500-etf-trust-sp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SPY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대형주
ISIN	US78462F1030	분류	주식형
상장일	1993.01.22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Shares Russell 2000 ETF
------	--------------------------

BM지수	Russell 2000 Index		
투자전략	Russell 2000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710/ishares-russell-2000-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IWM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중소형주
ISIN	US4642876555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0.05.22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The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BM지수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Index		
투자전략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S&P500 지수 내 경기소비재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etfs/funds/the-consumer-discretionary-select-sector-spdr-fund-xl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XLY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소비주
ISIN	US81369Y4070	분류	주식형
상장일	1998.12.22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Growth ETF		
BM지수	CRSP US Large Cap Growth Index		
투자전략	CRSP US Large Cap Growth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향후 높은 매출, 이익 증가율이 기대되는 미국 대형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VU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UG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성장주
ISIN	US9229087369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4.01.26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BM지수	FTSE Developed All Cap ex US Index		
투자전략	FTSE Developed All Cap ex US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 내 대표적인 4,000여개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V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EA US	주요 투자대상	선진국 주식
ISIN	US9219438580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7.07.20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	------	------------

ETF명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BM지수	MSCI Emerging Markets Investable Market Index		
투자전략	MSCI Emerging Markets Investable Market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신흥시장 내 대표적인 2,500여개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44050/ishares-core-msci-emerging-markets-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IEMG US	주요 투자대상	신흥국 주식
ISIN	US46434G1031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12.10.18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Real Estate ETF		
BM지수	MSCI US Investable Market Real Estate 25/50 Index		
투자전략	MSCI US Investable Market Real Estate 25/50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오피스, 호텔 등을 보유한 회사나 부동산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overview/vn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NQ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리츠
ISIN	US9229085538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4.9.23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Global ex-U.S. Real Estate ETF		
BM지수	S&P Global ex-U.S. Property Index		
투자전략	S&P Global ex-U.S. Property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30여개 국가 부동산투자신탁 및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overview/vnq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NQI US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리츠
ISIN	US9220426764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10.11.01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ASDAQ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 상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과 ETF.com(<https://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국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전망)	2022(전망)
미국	명목GDP	십억달러	21,373	20,894	22,940	24,796
	1인당 명목GDP	달러	65,052	63,358	69,375	74,725
	경제성장률(실질)	%	2.3	-3.4	6.0	5.2
	물가상승률	%	1.8	1.2	4.3	3.5
영국	명목GDP	십억달러	2,833	2,710	3,108	3,442
	1인당 명목GDP	달러	42,417	40,394	46,200	50,879
	경제성장률(실질)	%	1.4	-9.8	6.8	5.0
	물가상승률	%	1.8	0.9	2.2	2.6
독일	명목GDP	십억달러	3,889	3,843	4,230	4,557
	1인당 명목GDP	달러	46,800	46,216	50,788	54,653
	경제성장률(실질)	%	1.1	-4.6	3.1	4.6
	물가상승률	%	1.4	0.4	2.9	1.5
일본	명목GDP	십억달러	5,136	5,045	5,103	5,384
	1인당 명목GDP	달러	40,690	40,089	40,704	43,119
	경제성장률(실질)	%	0.0	-4.6	2.4	3.2
	물가상승률	%	0.5	0.0	-0.2	0.5
호주	명목GDP	십억달러	1,392	1,359	1,611	1,677
	1인당 명목GDP	달러	54,477	52,905	62,619	64,895
	경제성장률(실질)	%	1.9	-2.4	3.5	4.1
	물가상승률	%	1.6	0.9	2.5	2.1
중국	명목GDP	십억달러	14,341	14,867	16,863	18,463
	1인당 명목GDP	달러	10,170	10,511	11,891	12,990
	경제성장률(실질)	%	6.0	2.3	8.0	5.6
	물가상승률	%	2.9	2.4	1.1	1.8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 비교지수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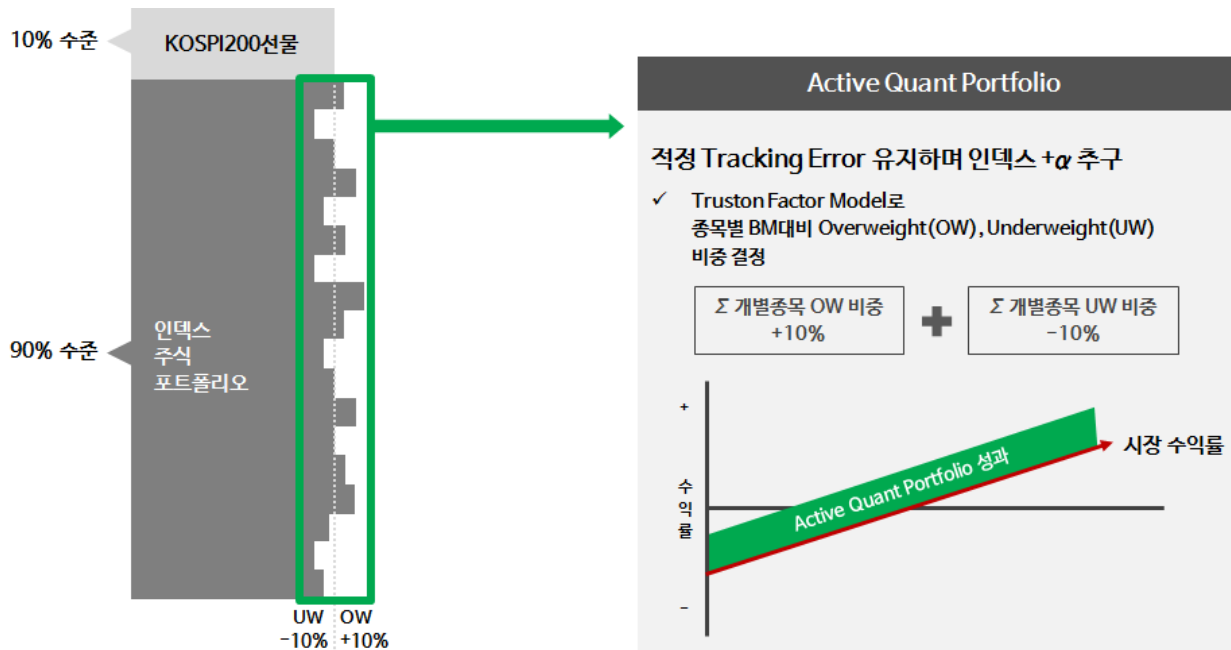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100%]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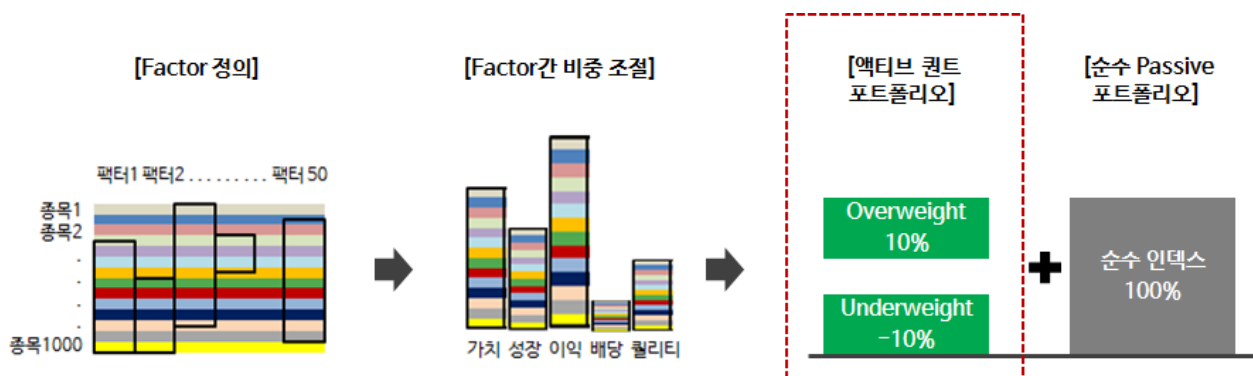
- 순수 패시브 포트폴리오와 KOSPI200선물로 KOSPI200수익률과 유사한 투자수익률 추구합니다.
-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Truston Factor Model)을 구성하여 BM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 (Active Quant Portfolio) 구성

개별종목위험, 시가총액/업종 리스크 등을 분산시켜 시장 중립성을 높이면서 의도한 Factor Exposure 에서만 장기 안정적인 초과수익 창출 추구

: Truston Factor Model 을 통해 선정된 시장설명력이 높은 3~6 개 팩터 내의 종목으로 종목별 BM 대비 비중을 조정하여 Overweight, Underweight 포트폴리오 구성



※ Truston Factor Model

다양한 팩터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경제적/통계적 유의미성이 높은 50 개 대표 팩터 중 장기적으로 시장설명력이 높은 3~6 개 팩터를 조합

- Truston Factor Model 의 종목 주가 결정 요인 = $\text{Beta}_1 \times \text{Factor}_1 + \dots + \text{Beta}_n \times \text{Factor}_n + \text{Alpha}$
 - : Beta 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가능
 - Beta : 종목의 각 요인에 대한 노출도 (Factor Exposure)
 - Factor : 각 요인의 수익률 기여도 (Factor Return)
 - Alpha : 종목의 특수성 (예) 사업전망, 브랜드파워, 경영진 등
- Value, Momentum, Earning Revision, Growth, Quality, Dividend, Money Flow 등으로 Factor 분류

□ 트러스톤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는 투자의 기회요인. 기업의 펀더멘탈과 ESG지표를 활용한 투자 및 주주활동(ESG Engagement)으로 양호한 펀드 운용성과를 추구함
- ESG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높은 ESG지표가 유지되는 기업 포함)
트러스톤 ESG 투자유니버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ESG등급을 리더/모멘텀/레거드A/레거드B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모멘텀 및 레거드A 등급의 ESG개선이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
*트러스톤 ESG투자프로세스의 ESG등급 기준 참조

Environment (환경)

- 기후변화, 탄소배출, 자원고갈, 환경오염, 청정기술

Social (사회책임)

- 고용평등, 노동환경, 노사관계, 인권, 지역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 소액주주보호, 배당확대, 의사결정, 대주주 전횡 방지

Fundamental

- 높은 이익가시성, 밸류에이션 매력, 배당/주주환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투자철학

- ESG의 개선이 재무적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 (이익의 증가, 자산의 효율성 상승, 주주환원 확대 등)
- 동일한 펀더멘탈에선 이미 높은 등급의 기업보다는 ESG등급이 개선되는 기업의 가치 상승여력이 높음
- ESG 지표가 높더라도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자체적인 ESG 개선 노력이 부족할 경우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 트러스톤 ESG 투자 프로세스



항목	내용
Macro 분석 및 Quant 전략분석	▪ 글로벌 경제 동향 ▪ 글로벌 이슈분석 ▪ 각국 주식시장 동향 등 ▪ 주요국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 종목 Screening
업종 및 기업분석	▪ 자체 Valuation 모델을 구축, 기업분석 후 실적추정, 가치평가. 가치평가는 Sum of Parts방법 등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분리, 가치평가)을 원칙으로 하고 섹터별로 적합한 밸류에이션 병행 ▪ 섹터 내 아이디어 제안은 담당 섹터애널리스트가 주로 함 ▪ 장기 이익 추정
ESG 평가	▪ 트러스톤 투자 유니버스 300~400 여개 내에서 자문기관의 ESG평가와 트러스톤의 내부 기준에 따른 ESG평가를 종합
Truston ESG Universe	▪ 자체적으로 ESG등급을 리더, 모멘텀, 레거드A, 레거드B 4개 등급으로 구분 ▪ ESG평가 변경에 따라 연 2회 정기 변경 및 유니버스 편출입 시 상시 변경
Actual Portfolio	▪ 트러스톤 ESG 유니버스 내에서 ESG개선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및 레거드A 등급에 50%이상 주로 투자 ▪ G(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높은 기업의 투자비중을 높게 유지 (*시장국면에 따라 변동 가능)
Engagement	▪ ESG 이슈 발생시 수탁자책임위원회의 대응 방안 논의 및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한 개선 유도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Governance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주주

행동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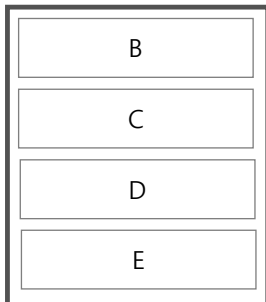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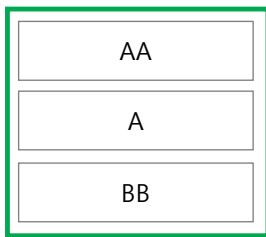
▪ 의결권 행사: 트러스톤 스튜어드십코드를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의결권 행사

※ 트러스톤 ESG 등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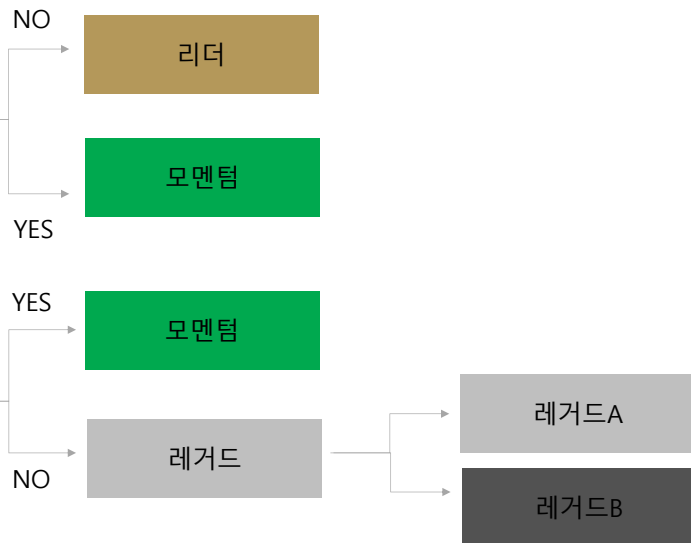
항목	내용
리더	외부평가기관인 (주)서스틴베스트의 ESG평가등급이 이미 B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종목 * (주)서스틴베스트 ESG평가 등급 분류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AA등급~E등급으로 분류함 (등급 세부 분류 기준 : AA, A, BB, B,C, D, E)
모멘텀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으로 ESG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ESG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트러스톤의 모멘텀 보유여부 판단기준 중 스코어가 좋은 기업 - 기존사업에서 사회의 탄소배출/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신사업을 통해 사회의 탄소배출/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사회환원, 인권, 노동권, 산업재해/안전사고, 양성평등, 공정거래, 소비자책임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해당 변화가 주주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ex. 내부거래 감소, 사익편취 근절, 배당성향의 상승 등) - 기업의 자본효율성(신규투자 또는 주주환원)의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ex. ROE의 상승) - 신규투자가 ESG의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
레거드A	Engagement(주주활동) 등으로 기업가치 레벨업 가능 종목으로, 외부평가기관인 (주)서스틴베스트의 ESG평가등급이 B등급 이하이지만 트러스톤의 레거드 판단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안정적인 기업의 Fundamental로 5년이상 흑자 지속 기업 -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FCF Yield를 보이며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 - 토지,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PBR이 시장평균을 하회하는 기업 - 규제외 변화, 주주행동, 경영권의 승계, M&A등 외부충격 발생시 ESG개선과 기업가치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레거드B	외부평가기관인 (주)서스틴베스트의 ESG평가등급이 B등급 이하이면서 기업펀더멘털도 부진한 기업으로 투자대상에서 제외 - PBR이 시장평균 이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낮은 기업 -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영업상황 또한 부진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기업 - ESG가 개선되더라도 투자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

※ 트러스톤 ESG등급 구조

서스틴베스트 ESG등급



트러스톤 ESG등급



□ 트러스톤 ESG투자의 특징

ESG평가

- ESG Scoring은 Stock이 아닌 Flow 개념으로 판단

향후 E. S. G 평가가 개선될 기업에 투자

투자기업

- 자체적인 ESG Scoring을 활용, ESG개선이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선별

대형주/중소형주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주주활동

(ESG

Engagement)

- 기업 자체적인 ESG 개선노력이 부족할 경우 Engagement 전략으로 기업가치 제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알파 추구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 중 배당, 이자 등 인컴(Income)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① 배당, 이자 등 인컴(Income)수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분산투자과 적극적 자산배분을 통해 인컴수익과 함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②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40% 이하 편입합니다.
- ③ 포트폴리오 및 보유자산의 변동성 제어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수익 확보를 우선하며 과도한 자본차익 추구는 지양합니다.
- ④ 주기적으로 현재 자산배분을 점검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밸런싱을 정기/수시로 실시합니다. 시장 변동이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전술적으로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 비중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 선진국(미국 등) 및 글로벌 배당주, 커버드콜 등
-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 선진국(미국 등) 국채, MBS, 투자등급채권, 우선주, 전환사채, 대출채권, 하이일드채권, 신흥국채권 등
-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 : 선진국(미국 등) 및 글로벌 리츠, 인프라 등

(2)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기준일 : 2022. 4. 30 기준]

자산군	종목(펀드)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 투자대상	투자 비중(안)
주식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ETF	미국	Vanguard	미국 배당주	20%
대체	Vanguard Real Estate ETF	ETF	미국	Vanguard	미국 리츠	5%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	ETF	미국	BlackRock	인프라 주식	5%
채권	iShares 10~20 Year Treasury Bond ETF	ETF	미국	BlackRock	미국 장기국채	10%
	Schwab U.S. TIPS ETF	ETF	미국	Charles Schwab	미국 물가연동국채	5%
	iShares Preferred and Income Securities ETF	ETF	미국	BlackRock	미국 우선주	15%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ETF	미국	Vanguard	미국 회사채	15%
	SPDR Bloomberg High Yield Bond ETF	ETF	미국	SSGA	미국 하이일드채권	10%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미국	BlackRock	신흥국 채권	15%

※ 상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2022년 4월 30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에 해당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TF명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BM지수	FTSE High Dividend Yield Index		
투자전략	FTSE High Dividend Yield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평균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VY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YM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배당주
ISIN	US9219464065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6.11.10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Real Estate ETF		
BM지수	MSCI US Investable Market Real Estate 25/50 Index		
투자전략	MSCI US Investable Market Real Estate 25/50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오피스, 호텔 등을 보유한 회사나 부동산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overview/vn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NQ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리츠
ISIN	US9229085538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4.9.23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		
BM지수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투자전략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운송, 통신, 상하수도, 전력 등을 공급하는 선진국 인프라스트럭처 산업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746/ishares-global-infrastructure-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IGF US	주요 투자대상	인프라 주식
ISIN	US4642883726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7.12.10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ASDAQ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Shares 10-20 Year Treasury Bond ETF		
BM지수	ICE US Treasury 10-20 Year Bond Index		
투자전략	ICE US Treasury 10-20 Year Bond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만기 10~20년 사이의 미국 정부발행 국채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453/ishares-1020-year-treasury-bond-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TLH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장기국채
ISIN	US4642886539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7.01.05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Schwab U.S. TIPS ETF		
BM지수	Bloomberg US Treasury Inflation-Linked Bond Index		
투자전략	Bloomberg US Treasury Inflation-Linked Bond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정부발행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schwabassetmanagement.com/products/sc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SCHP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물가연동국채
ISIN	US8085248701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10.08.05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Charles Schwab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	------	------------

ETF명	iShares Preferred and Income Securities ETF		
BM지수	ICE Exchange-Listed Preferred & Hybrid Securities Index		
투자전략	ICE Exchange-Listed Preferred & Hybrid Securities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배당 지급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미국 내 우선주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826/ishares-us-preferred-stock-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PFF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우선주
ISIN	US4642886877	분류	주식형
상장일	2007.03.26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ASDAQ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BM지수	Bloomberg US 5-10 Year Corp Index		
투자전략	Bloomberg US 5-10 Year Corp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내 만기 5~10년 사이의 달러표시 투자등급 회사채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VCI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VCIT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회사채
ISIN	US92206C8709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9.11.19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ASDAQ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SPDR Bloomberg High Yield Bond ETF		
BM지수	Bloomberg High Yield Very Liquid Index		
투자전략	Bloomberg High Yield Very Liquid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내에서 발행된 달러표시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etfs/funds/spdr-bloomberg-high-yield-bond-etf-j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JNK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하이일드채권
ISIN	US78468R6229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7.11.28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BM지수	J.P. Morgan EMBI Global Core Index		
투자전략	J.P. Morgan EMBI Global Core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 및 정부기관채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572/ishares-jp-morgan-usd-emerging-markets-bond-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EMB US	주요 투자대상	신흥국 채권
ISIN	US4642882819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7.12.17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ASDAQ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 상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과 ETF.com(<https://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국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전망)	2022(전망)
미국	명목GDP	십억달러	21,373	20,894	22,940	24,796
	1인당 명목GDP	달러	65,052	63,358	69,375	74,725
	경제성장률(실질)	%	2.3	-3.4	6.0	5.2
	물가상승률	%	1.8	1.2	4.3	3.5
영국	명목GDP	십억달러	2,833	2,710	3,108	3,442
	1인당 명목GDP	달러	42,417	40,394	46,200	50,879
	경제성장률(실질)	%	1.4	-9.8	6.8	5.0
	물가상승률	%	1.8	0.9	2.2	2.6
독일	명목GDP	십억달러	3,889	3,843	4,230	4,557
	1인당 명목GDP	달러	46,800	46,216	50,788	54,653
	경제성장률(실질)	%	1.1	-4.6	3.1	4.6
	물가상승률	%	1.4	0.4	2.9	1.5
일본	명목GDP	십억달러	5,136	5,045	5,103	5,384
	1인당 명목GDP	달러	40,690	40,089	40,704	43,119
	경제성장률(실질)	%	0.0	-4.6	2.4	3.2
	물가상승률	%	0.5	0.0	-0.2	0.5
호주	명목GDP	십억달러	1,392	1,359	1,611	1,677
	1인당 명목GDP	달러	54,477	52,905	62,619	64,895
	경제성장률(실질)	%	1.9	-2.4	3.5	4.1
	물가상승률	%	1.6	0.9	2.5	2.1
중국	명목GDP	십억달러	14,341	14,867	16,863	18,463
	1인당 명목GDP	달러	10,170	10,511	11,891	12,990
	경제성장률(실질)	%	6.0	2.3	8.0	5.6
	물가상승률	%	2.9	2.4	1.1	1.8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① 각 부문별 CIO, 리서치헤드, 펀드 매니저가 참석하는 Truston Global Macro Meeting을 통해 국가별, 자산군별 상대매력도 분석을 통한 펀드 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 ②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시장전망이 반영된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시장국면에 적합한 자산군별 비중을 결정하여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합니다.
- ③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정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또한 대외변수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합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 국내·해외채권펀드/ETF : 국고채, 회사채, 글로벌 채권
- 크레딧채권펀드/ETF : 미국하이일드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2)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기준일 : 2022. 4. 30 기준]

자산군	종목(펀드)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 투자대상	투자 비중(안)
채권	iShares Core U.S. Aggregate Bond ETF	ETF	미국	BlackRock	미국 채권	30%
	Active Bond Exchange-Traded Fund	ETF	미국	PIMCO	미국 채권	20%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Bond ETF	ETF	미국	Vanguard	글로벌채권	30%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	한국	삼성자산운용	한국 채권	20%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TF명	iShares Core U.S. Aggregate Bond ETF		
BM지수	Bloomberg US Aggregate Bond Index		
투자전략	Bloomberg US Aggregate Bond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국채, 정부기관채 및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458/ishares-core-total-us-bond-market-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AGG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채권
ISIN	US4642872265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3.9.22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BlackRock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PIMCO Active Bond ETF		
BM지수	Bloomberg U.S. Aggregate Index		
투자전략	Bloomberg U.S. Aggregate Index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미국 국채, 정부기관채 및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pimco.com/en-us/investments/etf/active-bond-exchange-traded-fu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BOND US	주요 투자대상	미국 채권
ISIN	US72201R7750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12.2.29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Bond ETF		
BM지수	Bloomberg Global Aggregate ex-USD Float Adjusted RIC Capped Index (USD Hedged)		
투자전략	Bloomberg Global Aggregate ex-USD Float Adjusted RIC Capped Index (USD Hedged) 성과 추종		
투자관련 정보	비달러화 표시 투자등급 국제, 정부기관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investor.vanguard.com/etf/profile/overview/bnd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BNDX US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채권
ISIN	US92203J4076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03.5.31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NYSE	운용사	Vanguard
등록국	미국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명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BM지수	KAP 한국종합채권지수(AA-이상 총수익)		
투자전략	KAP 한국종합채권지수(AA-이상 총수익) 성과를 추종		
투자관련 정보	한국의 우량채권시장(AA-이상)에 투자하며, 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는 웹페이지(https://www.kodex.com/product_view.do?fld=2ETF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 Ticker	273130	주요 투자대상	한국 채권
ISIN	KR7273130005	분류	채권형
상장일	2017.6.29	구조	개방형
주거래소	한국거래소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등록국	한국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주) 상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과 ETF.com(<https://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국가	항목	단위	2019	2020	2021(전망)	2022(전망)
미국	명목GDP	십억달러	21,373	20,894	22,940	24,796
	1인당 명목GDP	달러	65,052	63,358	69,375	74,725
	경제성장률(실질)	%	2.3	-3.4	6.0	5.2
	물가상승률	%	1.8	1.2	4.3	3.5
영국	명목GDP	십억달러	2,833	2,710	3,108	3,442
	1인당 명목GDP	달러	42,417	40,394	46,200	50,879
	경제성장률(실질)	%	1.4	-9.8	6.8	5.0
	물가상승률	%	1.8	0.9	2.2	2.6
독일	명목GDP	십억달러	3,889	3,843	4,230	4,557

	1인당 명목GDP	달러	46,800	46,216	50,788	54,653
	경제성장률(실질)	%	1.1	-4.6	3.1	4.6
	물가상승률	%	1.4	0.4	2.9	1.5
일본	명목GDP	십억달러	5,136	5,045	5,103	5,384
	1인당 명목GDP	달러	40,690	40,089	40,704	43,119
	경제성장률(실질)	%	0.0	-4.6	2.4	3.2
	물가상승률	%	0.5	0.0	-0.2	0.5
호주	명목GDP	십억달러	1,392	1,359	1,611	1,677
	1인당 명목GDP	달러	54,477	52,905	62,619	64,895
	경제성장률(실질)	%	1.9	-2.4	3.5	4.1
	물가상승률	%	1.6	0.9	2.5	2.1
중국	명목GDP	십억달러	14,341	14,867	16,863	18,463
	1인당 명목GDP	달러	10,170	10,511	11,891	12,990
	경제성장률(실질)	%	6.0	2.3	8.0	5.6
	물가상승률	%	2.9	2.4	1.1	1.8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10)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 이자수익 획득과 비교지수(KIS국고채5~10년 지수×100%)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채, 특수채 등 우량 장기 채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며, 듀레이션 전략에 치중하지 않고, 철저한 리서치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Alpha Source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 매주 국가별(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펀더멘털(소비/생산, 투자, 수출, 경기, 물가, 고용 등)과 통화정책 및 수급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듀레이션 전략을 수립합니다.
-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10개 변수의 Signal Model을 활용하여 듀레이션 강도 결정 시 참조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8.8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

-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만기구간에 투자를 하여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확대)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 이를 위해 주요국 통화정책, Implied forward rate 상 3y10y Spread와 실제간 괴리 정도, 버터플라이 매력도 측정,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수급 교란 요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Yield Curve

전략을 수립 합니다.

- 매크로 지표 중 선행성 높은 지표로 장기물 적정 금리 추정하고,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Forward Path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만기별 내재선도기준금리를 추출하여, 추출된 Term Spread와 실제 Spread간 괴리를 과잉반응의 척도로 삼아 전략 수립에 참고합니다.

(3) 크레딧 전략

- 체계적 정량/정성분석을 바탕으로 크레딧 유니버스를 관리하고, 섹터/종목 운용전략 수립과 집행을 통해 초과성과 창출을 추구합니다.

□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듀레이션 전략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듀레이션 : 1~2년)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2.7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만기구간에 투자를 하여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확대)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공급 요인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상대가치 전략

상대가치 전략은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① 수익률곡선 전략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② 종목선택 전략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 1~2년 지수×100%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중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므로 채권시장 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3)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① 변동성 관리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변동성(“표준편차”) 추이를 관리합니다.

→ 변동성이 커질수록 의도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동성 확인 후 편입 펀드의 편출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수익률 관리

- 펀드의 MDD(Maximum Draw Down)를 관리합니다.

- 재간접펀드에 편입된 펀드별 BM(또는 참조지수) 대비 성과를 관리합니다.

③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 ETF 선정에 있어 규모(AUM) 및 거래량을 고려해 상위 ETF를 선정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만약 위기가 발생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 들거나, 평균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 또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부족 위험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 해외운용사의 운용규모나 거래대금이 큰 운용사를 선정함으로써 해외운용사 ETF의 상장폐지 위험 또는 운용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④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시기, 내용(자산구성현황, 운용성과 등), 경로를 통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기적인 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등을 점검하여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ETF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는 운용목적, 기본정보, 운용성과, 투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4)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비용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및 주식관련 ETF 등에 투자하여 투자 국가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에서 해외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외화표시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통화 관련 장외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도포지션구축 등의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70% 이상^{주1)}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헤지비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주1) 목표 헤지비용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동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추가 이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

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 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④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관련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형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트증권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증권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트증권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트러스트증권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 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 방식 변경 및 중단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 기구 유동성 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 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내재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 평가 등을 통해 선별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출 조건과의 차이, 시장상황변화, 초과수익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복제법 실행에 따른 추적대상지수와 실제포트폴리오의 종목 구성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에 대한 추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비교지수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과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스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중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 /인프라 집합 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REITs)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REITs)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 /인프라 집합 투자기구 등의 유동성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채 연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로 전략적인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을 통해 운용됩니다. 부채연계 포트폴리오는 퇴직연금 부채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나 부채 변동을 모두 헤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채의 지급부담 완화,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의 자본손실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하여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 등을 통하여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익추구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ESG 등급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한 주식의 ESG평가등급이 변동(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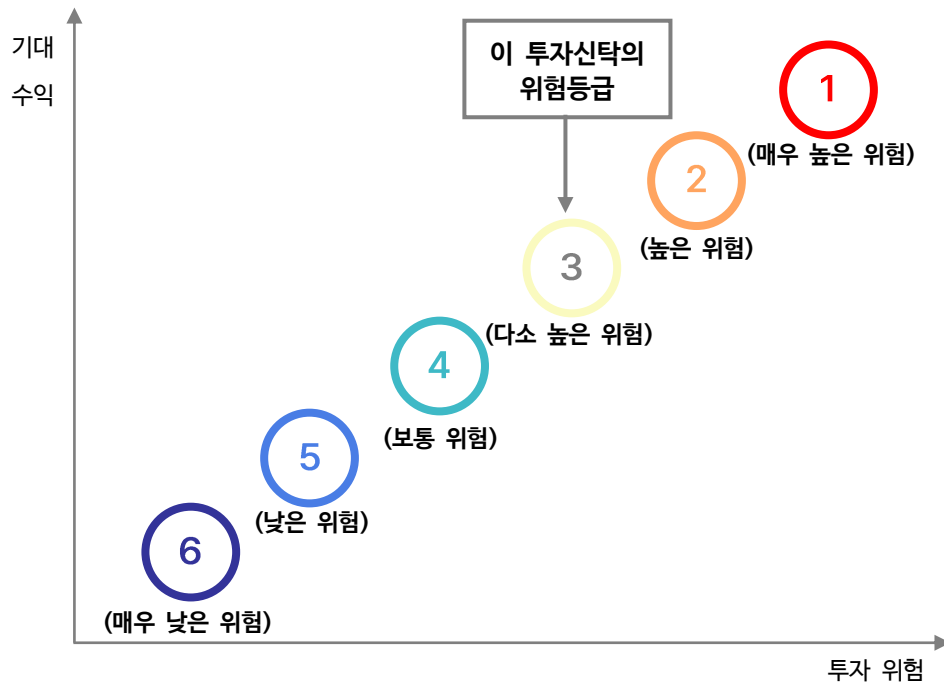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주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주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 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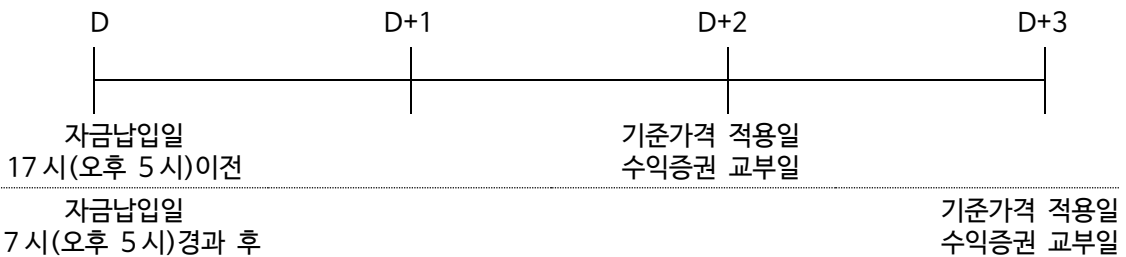
종 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의 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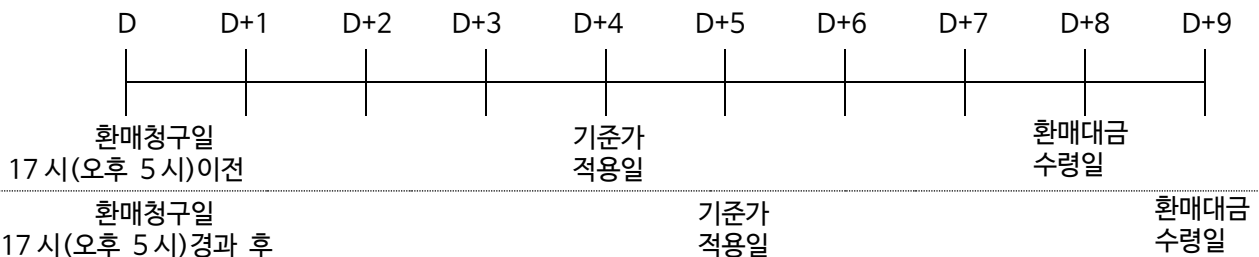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 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보유 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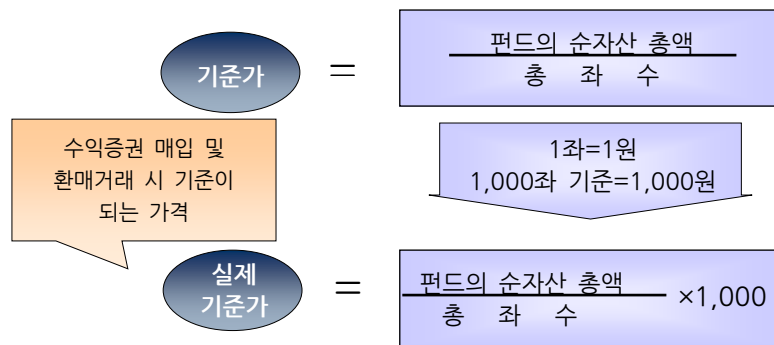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산정방법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그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로 평가할 수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옵션(O)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의 총보수·비 용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120	0.220	0.035	0.015	0.390	0.001	0.391	0.990	0.484	0.003
수수료선취-온라인(Ae)	0.120	0.110	0.035	0.015	0.280	0.001	0.281	1.270	0.374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120	0.350	0.035	0.015	0.520	0.001	0.521	0.620	0.614	0.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120	0.175	0.035	0.015	0.345	0.001	0.346	0.830	0.439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0.120	0.030	0.035	0.015	0.200	0.001	0.201	-	0.294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0.120	0.000	0.035	0.015	0.170	0.001	0.171	-	0.264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120	0.320	0.035	0.015	0.490	0.001	0.491	-	0.584	0.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120	0.160	0.035	0.015	0.330	0.001	0.331	-	0.424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120	0.280	0.035	0.015	0.450	0.001	0.451	-	0.544	0.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120	0.140	0.035	0.015	0.310	0.001	0.311	-	0.404	0.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디폴트 옵션(O)	0.120	0.080	0.035	0.015	0.250	0.001	0.251	-	0.344	0.003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기타비용과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상기의 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093%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3.2.28.기준)
- 주 6) 금융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택-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1	134	178	274	5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101	153	209	327	671
수수료선택-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85	118	187	3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64	105	148	240	5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5	112	172	299	6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64	132	202	352	7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6	74	114	199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46	94	145	252	5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	43	66	116	2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31	63	97	170	3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	37	57	99	2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28	57	87	152	3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5	162	282	6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61	125	192	335	7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	71	109	191	4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45	91	140	244	5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59	5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57	117	179	312	7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7	103	179	4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42	87	133	232	5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O)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	54	83	145	3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36	74	113	198	447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093%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table><tr><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tr><td>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d>15%</td></tr><tr><td>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td><td>(900만원)</td><td>12%</td></tr></table> ※지방소득세 별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2023.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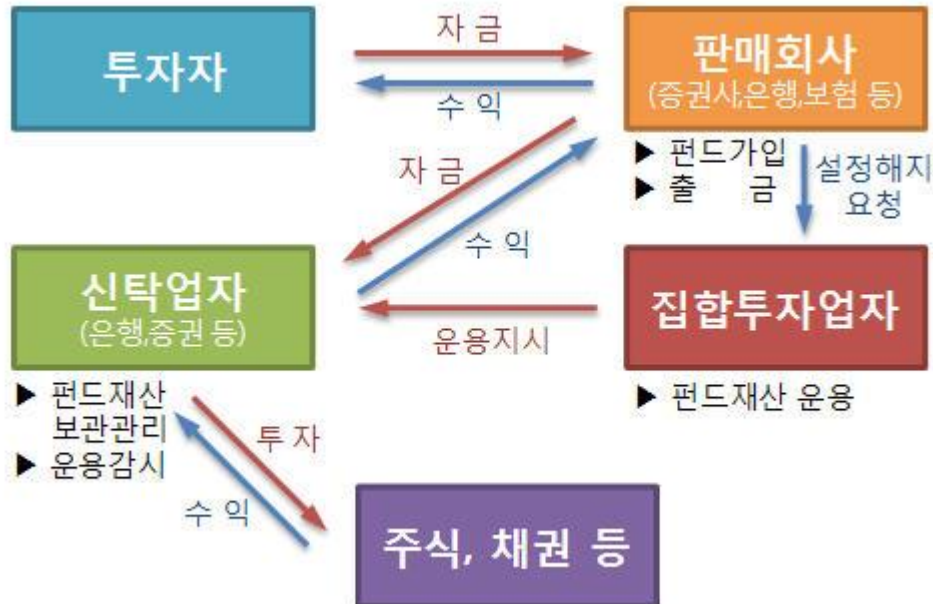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트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성수동 1 가) (☎ 6308-0500)
인 터 넷 홈 페이지 주소	www.trustonasset.com
자 본 금	137.75억원
이 해 관 계 인 (2023. 3. 31 기준)	이해관계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57.07%)
회 사 연 혁	1998.04 IMM투자자문(주)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5기 (2022.12.31)	제24기 (2021.12.31)
1. 현금및예치금	16,575	19,126
2. 유가증권	51,419	62,678
3. 대출채권	1,722	1,245
4. 유형자산	11,482	10,187
5. 투자부동산	9,866	10,021
6. 기타자산	9,734	9,352
자산총계	100,798	112,609
1. 차입부채	8,000	8,000
2. 기타부채	3,978	11,596
부채총계	11,978	19,596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360	11,36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6	-760
4. 이익잉여금	88,648	93,155
5. 기타자본항목	-24,517	-24,517
자본총계	88,820	93,013
부채 및 자본총계	100,798	112,609

영업수익	25,814	35,183
영업이익	-1,682	11,733
당기순이익	-605	11,305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3.3.31.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 ^{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45,928	8,851	4,932	1,250	242	30,106	91,309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기타: 혼합자산,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1588-2588)
인터넷홈페이지주소	www.ibk.co.kr
회사연혁	1961.08 중소기업은행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2-6714-4600)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1)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세미나 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이 트러스트자산운용에서 고유재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의무 투자

가. 투자목적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나. 투자금액 : 2 억원

다. 투자기간 : 최초 투자일(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가. 의무해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나. 임의해지 (1)의 ③,④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신탁 전부 해지

라. 회수 계획 :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과 및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2 회 이상 분할하여 환매하되, 투자금이 펀드 순자산의 50% 미만인 경우 전부 환매할 수 있습니다.

마. 투자금 회수 관련 공시 방법

(1) 최초 투자일(설정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의 1 개월 이전에 트러스트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2) 투자금 환매시 환매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트러스트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2) 추가 투자

가. 추가 투자 금액 : 10 억원

나. 투자목적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다. 투자기간

: 추가 투자일부터 최소 3 개월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회수 계획

: 고유재산 자금 필요시 또는 회사의 손익구조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과 및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매할 계획입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